
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78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21.

발 의 자 : 주호영 · 이종배 · 김태흠
조태용 · 이 용 · 류성걸
임이자 · 김형동 · 김희곤
유의동 · 권은희 · 金炳旭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물질은 정하고 있지 않음.

이에 미세먼지, 이산화탄소,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).
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”를 “위하여 미세먼지, 이산화탄소, 산소,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)</p> <p>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5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<u>위하여 미세 먼지, 이산화탄소, 산소,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